

2025 적극행정제 가이드라인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
법제로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
법제로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CONTENTS



Part 1

적극행정과 적극행정 법제 5p

- 01** 적극행정이란? 6p
- 02** 적극행정이 필요한 이유 6p
- 03** 적극행정 법제란? 7p
- 04** 적극행정 법제가 필요한 이유 8p
- 05**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이란? 8p
- 06** 적극행정 법제, 이럴 땐 이렇게! 9p



Part 2

적극행정을 위한 법령입안 11p

- 01** 유연한 입법방식 14p
- 02** 하위법령 활용 25p
- 03** 자치법규 대폭 위임 32p



Part 3

적극행정을 위한 법령정비 41p

- 01**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법령정비 43p
- 02** 경제활성화 및 규제혁신을 촉진하는 법령정비 55p

적극행정법제

가이드라인



Part 4

적극행정을 위한 법령해석 67p

- 01** 입법 공백 시
국민 편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석 69p
- 02** 규제 등 침익요건에
대한 불필요한 확대
적용 금지 77p
- 03** 허가 등 수익요건에
대한 축소해석
금지 85p



부록

적극행정을 위한 법제처 활용법 95p

- 01** 중앙행정기관 96p
- 02** 지방자치단체 98p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Part 1

적극행정과 적극행정 법제

- 01** 적극행정이란? 6p
- 02** 적극행정이 필요한 이유 6p
- 03** 적극행정 법제란? 7p
- 04** 적극행정 법제가 필요한 이유 8p
- 05**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이란? 8p
- 06** 적극행정 법제, 이럴 땐 이렇게! 9p

1



적극행정이란?

- ☞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2



적극행정이 필요한 이유

- ☞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고 다양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적극행정 법적근거

「행정기본법」

제4조(행정의 적극적 추진) ① 행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 및 조치를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의 적극적 추진 및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구체적인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제처는 「행정기본법」을 제정하여 적극행정이 법률상 의무임을 선언하고 행정의 전 분야에 활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여건 조성 및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1조(친절·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정의)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정의) "적극행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적극행정 법제란?

- ✔ 적극행정 법제란 법령의 입안, 정비 및 해석 등 법제행정을 통해 적극행정을 실천하는 것으로,
- ✔ 법령을 입안할 때는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법제 기준을 적용하고, 법률의 제정·개정 없이 하위법령으로 정책이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면 신속하게 하위법령을 제정·개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무에 대한 자치입법권과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 또한, 기존 법령이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공공의 이익과 어긋나거나, 획일적이고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법령을 정비하여 적극행정의 입법적 기반을 구축해야 합니다.
- ✔ 마지막으로 법령을 해석할 때에는 법령의 범위에서 공공의 이익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고, 법령의 취지에서 벗어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됩니다.

Q 「적극행정 운영규정」

- 제9조(적극행정 법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이나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입법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내용이 법률로 정하지 않아도 될 사항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을 제정 또는 개정해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검토하여 신속하게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
1.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제처장이 통보한 법령정비안을 검토한 결과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기술 또는 환경의 변화로 법령의 개선이 필요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법령을 해석할 때에는 법령의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법령의 취지를 벗어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Q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 제9조(적극행정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술 또는 환경의 변화로 개선이 필요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치법규를 입안하거나 정비해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자치법규를 해석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취지를 벗어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4



적극행정 법제가 필요한 이유

- ✔ 법률의 제정·개정에는 긴 시간이 필요한 반면, 사회환경 변화는 급격하게 이루어져 시대 변화에 뒤떨어지는 법령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성장 동력이 위축되고 불필요한 규제가 양산됩니다.
- ✔ 또한, 예산 지원이나 행정조치로 가능한데도 법률에 근거를 두려고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 없는 사항까지 법률에 세세하게 규정하여 법률의 복잡화와 행정의 경직화를 초래합니다.
- ✔ 그리고 감사나 징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책임을 회피하려고 법령을 소극적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 ✔ 법제처는 이러한 폐단을 고치고 법령이 적극행정의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되도록 적극행정 법제 확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5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이란?

- ✔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은 공무원 누구나 자신의 업무에서 법령을 입안·정비하거나 해석할 때 적극행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실용지침서입니다.
- ✔ 가이드라인은 적극행정 법제를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법제행정 단계마다 사례 중심으로 적극행정 법제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 또한, 일선 공무원이 적극행정 법제를 수행하다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법령입안지원, 법령정비, 정부유권해석 및 자치법규 의견제시 등 법제처의 종합적인 적극행정 법제 지원체계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Q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9조(적극행정 법제) ④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른 법령 입안의 기준과 제3항에 따른 법령 해석의 원칙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중앙행정기관에 전파해야 한다.

제10조(적극행정 법제 지원) 법제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령의 입안, 정비 및 해석 등에 관하여 자문이나 상담, 교육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6 적극행정 법제, 이럴 땐 이렇게!



?

적극행정 법제가 궁금할 땐!

※ 부록 적극행정을 위한 법제처 활용법(p.95) 참고

- 1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다운로드
- 2 적극행정 법제 교육신청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





Part 2

적극행정을 위한 법령입안

- 01 유연한 입법방식 14p
- 02 하위법령 활용 25p
- 03 자치법규 대폭 위임 32p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9조(적극행정 법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이나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입법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내용이 법률로 정하지 않아도 될 사항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을 제정 또는 개정해야 한다.



적극행정을 위한 법령입안,
이럴 땐 이렇게!



법령을 입안해야 하나요?



꼭 법률이어야 할까요?



법률

- 1 유연한 입법방식을 활용합니다.
- 2 하위법령으로 위임할 부분은 없는지 살펴봅니다.
- 3 자치법규로 위임할 부분은 없는지 살펴봅니다.



하위법령

- 1 신속하게 하위법령을 제정·개정합니다.
- 2 유연한 입법방식을 활용합니다.
- 3 하위법령이나 행정규칙 등으로 위임할 부분은 없는지 살펴봅니다.
- 4 자치법규로 위임할 부분은 없는지 살펴봅니다.



적극행정을 위한 법령입안

1

유연한 입법방식

급격한 사회 변화나 다양한 행정수요에 법령이 탄력적으로 대응되도록 특히 신산업·신기술 관련 분야의 법령을 만들 때에는 유연하게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연한 입법방식의 예로는 ①포괄적 개념정의, ②분류체계의 유연화, ③원칙허용·예외 금지 방식으로의 전환, ④사후 평가·관리 등이 있습니다.

2

하위법령 활용

법률을 입안할 때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변화에 대비해 하위 법령으로 위임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미리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기술적 사항뿐만 아니라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집행적 사항은 하위법령을 제정·개정하여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자치법규 대폭 위임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추진을 통해 지역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법령을 입안하는 과정에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법령 입안 단계부터 개별 사무에 대한 전국적·통일적 기준의 공통 적용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그 사항을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고, 법령상 규제 기준에 대하여도 필요한 경우에는 지자체가 법령상 규제 기준보다 강화 또는 완화된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령 체계도

헌법

헌법에서 법률로 정하도록 한 사항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법률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법률 집행에 필요한 사항
국정의 통일적 추진·집행을 위한 기본 방침
여러 부처에 공통되는 사항

대통령령

법률·대통령령 위임 사항 또는 집행에 필요한 사항
각 부처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항
서식·절차 등에 관한 사항

총리령 / 부령

자치법규(조례, 규칙)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에 관한 사항
법령(규칙의 경우 조례 포함) 위임 사항
법령 집행에 필요한 사항

유연한 입법방식

포괄적 개념 정의 1



Point

- ☑ 특히 신산업·신기술 또는 다양한 범위를 아우르는 분야의 경우에는 용어의 개념을 정의할 때 새로운 제품·산업·서비스 등이 법령의 제정·개정 없이도 해석에 의해 포함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다만, 지나친 포괄적 정의로 해석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

- ☑ 기술의 발전에 따라 스마트폰에 내장형가입자식별모듈(eSIM)*이 도입되었으나 관련 규정은 USIM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새로운 형태의 SIM들은 현행 법체계에서 포함될 수 없었습니다.

* 스마트폰에서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식별하는 모듈로 USIM은 실물칩을 구매하여 스마트폰에 삽입하여 사용하나 eSIM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칩에 사용자 정보를 다운로드하여 사용하므로 가격이 USIM에 비해 저렴하고 배송시간도 짧음

입안 방향

- ☑ 기존 USIM만을 대상으로 한 규정을 포괄적 개념으로 정의하여 USIM 뿐만 아니라 eSIM과 같은 다른 유형의 SIM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종전 규정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3조제1항
24. “이동전화 범용가입자식별모듈(USIM)”이라 함은 이동통신서비스가 가능한 통신단말장치에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 식별정보 등이 저장되어 있는 장치를 말한다.



개정 규정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3조제1항
24. “이동전화 가입자식별모듈(Subscriber Identity Module)”이라 함은 이동통신서비스가 가능한 통신단말장치에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 식별정보 등이 저장되어 있거나 사용자 식별정보 등이 이미 저장되어 있지 않더라도 원격으로 다운로드하여 저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포괄적 개념 정의 2

NEW!

현황 및 문제점

- ☑ 종전 「식품위생법 시행령」에서는 완제품을 판매하는 자판기를 중심으로 시설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어, 솜사탕 자판기, 밀키트 자판기 등 기술의 발전에 따라 등장한 다양한 기능을 갖춘 식품자동판매기의 관리체계가 미비하였습니다.

입안 방향

- ☑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을 자동판매기 내부에서 자동 처리 과정을 거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정의함으로써 해당 영업이 위생관리 등 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개정 전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식품소분·판매업

나. 식품판매업

2)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다만, 소비기한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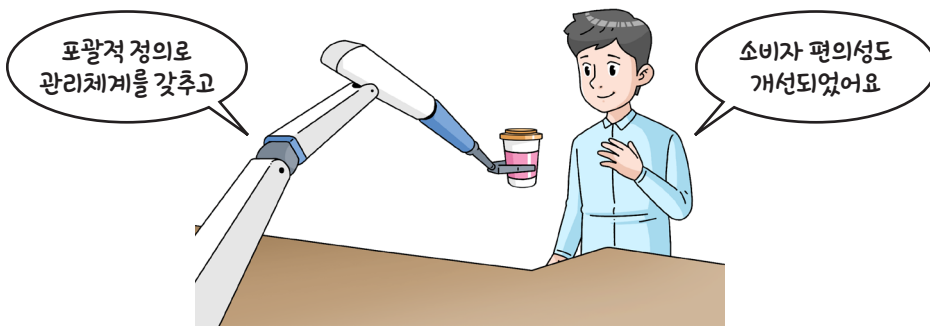
개정 후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식품소분·판매업

나. 식품판매업

2)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그대로 판매하거나 내부에서의 자동적인 혼합·
처리과정을 거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다만,
소비기한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
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분류체계의 유연화 1



Point

- ☑ 분류체계의 유연화는 정책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는 영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을 전파가능성, 치명률 등에 따라 1급부터 4급까지의 감염병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4급감염병은 법률에 명시된 감염병에 한정되어 코로나19처럼 감염병의 심각도와 전파력이 낮아진 상황에서도 법정 감염병 급수 조정을 위하여 법률 개정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 탄력적인 감염병 관리정책에 장애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입안 방향

- ☑ 법령의 개정 없이도 상황에 따라 탄력적이고 신속한 감염병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제4급감염병에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이 포함되도록 분류체계를 유연하게 개선하였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생략)

5. “제4급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 감시 활동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분류체계의 유연화 2



Point

- ☑ 특히 국민들에게 수익적 효과가 발생하는 분야의 경우에는 법령이 다양한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엄격하거나 경직되지 않게 규정하여 분류체계에 보편성과 일반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 또한, 유연한 분류체계 도입을 위해 하위법령으로 위임할 때에는 “포괄재위임 금지 원칙”에 따라 국민이 예측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합니다.



현황 및 문제점

-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발급 받아 활용할 수 있는 소외자의 범위를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한정하고 있어 그 외 산림복지에서 소외되어 있는 사람에 대한 지원은 어려웠습니다.

입안 방향

- ☑ 기존 산림복지소외자 외에도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산림복지 혜택을 누리기 위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 중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까지 포함되도록 분류체계를 유연화하였습니다.

종전 규정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각 호 제2조(산림복지소외자의 범위)

1.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3.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개정 규정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각 호 제2조(산림복지소외자의 범위)

1.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3.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5.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산림복지 혜택을 누리기 위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분류체계의 유연화 3



Point

- ☑ 예측할 수 없는 국가적 재난과 같이 신속한 행정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도 유연한 분류체계를 도입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

- ☑ 「특허법 시행령」에서는 국가적 재난 극복에 필요한 특허심사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난의 예방·대응·복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허출원의 경우 다른 출원에 비해 우선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다양한 재난상황과 그로 인해 우선 심사가 필요한 대상들을 미리 파악하여 규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입안 방향

- ☑ 감염병, 지진, 테러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재난 극복을 위해 신속한 특허 출원 심사가 필요한 상황에 유연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특허청장이 우선 심사 대상을 지정하여 공고할 수 있도록 분류체계를 유연하게 규정합니다.

「특허법 시행령」

제9조(우선심사의 대상) ② 법 제61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출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허출원을 말한다.<신설 2021.6.22.>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허출원
 -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1호에 따른 의료·방역 물품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 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 재난으로 인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특허청장이 우선심사 신청 기간을 정해 공고한 대상에 해당하는 특허출원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으로의 전환 1

현황 및 문제점

-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서는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발생의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를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 대상은 총리령으로 위임하였습니다.

입안 방향

- ☑ 총리령에서는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리할 수 있는 수입신고의 대상을 한정하는 대신 4가지 유형의 비대상만을 정함으로써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리할 수 있는 수입신고의 대상은 **수입식품등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수입식품등**으로 한다.

1.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조건을 붙일 수 있는 수입식품등
2.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조건을 붙여 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 수입식품등
3. 별표 9 제2호가목에 따른 서류검사의 대상 중 최초로 수입된 수입식품등
4. 별표 9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검사대상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으로의 전환 2



Point

- ☑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적격 요건만 열거하고 그 외의 사항은 모두 허용하도록 규정합니다.



현황 및 문제점

- ☑ 「사회복지관 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사회복지관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위탁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탁기관이 될 수 있는 자의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입안 방향

- ☑ 수탁기관의 부적격 요건만 규정하여 부적격자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기관이 위탁 운영 입찰에 응모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경쟁력 있는 위탁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으로의 전환 3

현황 및 문제점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의료시설, 물류시설, 어린이집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충분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입안 방향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농업, 어업, 제조업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한 시설이나 숙박시설 등 입주할 수 없는 시설만 나열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은 입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종전 규정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② 법 제28조의 5제1항제3호에 따른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 하기 위한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해당 지식 산업센터의 입주자의 생산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규정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② 법 제28조의 5제1항제3호에 따른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 하기 위한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로** 한다.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으로의 전환 4

NEW!

현황 및 문제점



입안 방향

☑ 종전 「여권법 시행령」 제45조에서는 여권의 명의인이 여권의 발급·재발급 사실 및 여권 수령 안내 등의 서비스 제공에 사전 동의를 해야만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 여권 명의인의 사전 동의 없이도 여권의 발급 등에 대해 안내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수신거부 희망 시 여권 안내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개정 전

안내 서비스 제공에 대해 **동의를 한 경우에만** 안내 서비스 제공



개정 후

안내 서비스 제공에 대해 **수신거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내 서비스 제공



사후 평가·관리 1



Point

- ☑️ 민간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신규 사업자가 신속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사전적인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를 필요에 따라서는 사후적으로 평가·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규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때에도 생명·안전·환경 분야에서는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 사전적인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를 사후적인 평가 관리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기술 발전이나 환경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



입안 방향

-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농산물 검정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는 장비를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어 새롭게 농산물 검정기관이 되려는 자는 많은 장비를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 ☑️ 농산물 검정기관이 되려는 자는 검정방법을 운용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 장비만을 갖추도록 법령을 개선하여 신규 사업자에게 발생하는 불필요한 부담을 줄였습니다.

사후 평가·관리 2



Point

- ☑ 법령상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

- ☑ 「물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사전에 변경신고를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료, 첨가물 등의 변경이 없어도 원인 불명의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사전에 변경신고를 하기 어려워 과태료나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입안 방향

- ☑ 폐수배출시설에서 원료, 첨가물 등의 변경이 없으나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더라도 최근 6개월 이내에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자가측정을 한 경우에는 사후 변경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2 하위법령 활용

포상금



Point

- ☑ 행정에 도움을 준 대가로 지급하는 포상금은 국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와 무관하므로 하위법령이나 자치법규에서 규정할 수 있습니다.



개념



입안 예시

- ☑ 포상금은 범죄행위를 신고한 자 또는 어떤 일에 성과를 창출한 자에게 그에 따른 대가로 지급하는 금전을 의미합니다.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7조(재난 및 안전관리 공로자 포상 등)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안전관리 및 안전문화 확산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 「〇〇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제39조(포상금) ① 시장은 국내기업등 및 외국인투자의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포상금,
유연하게 규정 가능!

보조금



Point

- ☑ 보조금에 대해서는 일반법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으므로 개별 법률에 근거를 둘 필요 없이 예산의 편성이나 집행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치법규의 경우에도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보조금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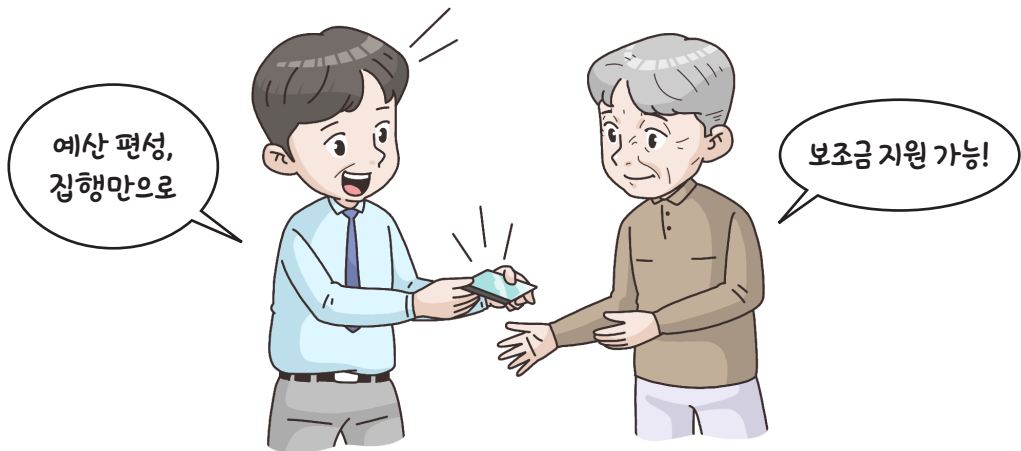
개념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적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반대급부 없이 교부하는 금전을 의미합니다.



입안 예시

- ☑ 「〇〇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제4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구청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스템 구축



Point

- ☑ 행정기관이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보유 중인 단순 행정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와 무관하므로 하위법령 또는 자치법규에서 시스템 구축의 근거를 규정할 수 있습니다.



개념



입안 예시

- ☑ 시스템은 행정기관이 업무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나 국민·관계기관에 단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운영하는 관리체계를 의미합니다.

-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현황 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발급기관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등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현황 및 관련 자료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 「○○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집수리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시장은 집수리 종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저층주거지 거주민 또는 집수리업체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자문위원회



Point

- ☑ 자문위원회는 절차가 임의적이고, 결정이나 판단에 대외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하위법령에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자치법규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자문위원회를 규정할 수 있으며, 사무에 따라서는 규칙으로도 규정할 수 있습니다.



개념

- ☑ 자문위원회는 행정업무를 효율적·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자문을 목적으로 해당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하는 위원회를 의미합니다.

입안 예시

-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의 설치) ①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 「〇〇시 〇〇구 인문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1조(인문도시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인문도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〇〇시 〇〇구 인문도시자문위원회를 둔다.

수수료

Point

- ☑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법률에 근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나, 본질적으로 서비스의 이용에 대한 등가적인 부담으로서 당연히 지불해야 하는 것이므로 신속한 입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하위법령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 ☑ 다만, 서비스의 이용이 법령에 따라 강제되거나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에는 법률에서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 ☑ 자치법규의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하거나 상위법령에서 직접 수수료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면 「지방자치법」 제154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수수료를 규정할 수 있습니다.

개념

- ☑ 수수료는 행정기관의 서비스를 받거나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에 부담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입안 예시

-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7(자격시험 수수료)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 ☑ 「〇〇시 〇〇구 어린이 영어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수강료 등의 징수) ① 구청장은 영어도서관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프로그램 수강료 및 수수료(이하 “수강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으며, 수강료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시범사업의 실시



Point

- ☑ 국민의 안전이나 생명과 무관한 분야의 시범사업이라면 하위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서 규정할 수 있습니다.



개념



입안 예시

- ☑ 시범사업은 어떤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그 결과를 예측하기 위하여 시험 삼아 실시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 ☑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2조(시범사업의 실시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콘텐츠 거래사실의 인증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그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 「○○도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한지산업 활성화 시범사업의 실시) 도지사는 한지산업에 대한 도민의 인식을 높이고 친환경 기능성 건축자재인 한지와 한지사의 활용과 촉진을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행정규칙 활용



Point

- ☑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더라도 행정규칙에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은 급변하는 환경과 다양한 국민적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행정규칙을 제정·개정할 수 있습니다.



개념

- ☑ 중앙행정기관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령의 시행 또는 행정사무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행정규칙(훈령·예규·규정·지침 등)을 발령할 수 있습니다. 행정규칙은 법령에서 인정한 직무권한 내에서 발령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법령의 위임이 필요하지 않으나, 법규명령의 성격을 갖는 행정규칙은 반드시 법령의 위임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법률에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령의 내용과 다른 사항 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서는 안 됩니다.

입안 예시

- ☑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발명교사 인증의 기준 등) ① ~ ⑥ (생략)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 등급별 세부기준, 심사 및 유효기간의 연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직무권한 내에서
행정규칙 발령



중앙행정기관



3

자치법규 대폭 위임

법령상 규율 완화 및 조례 위임 확대 1



Point

- ☑ 전국적·통일적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도 상·하한의 범위, 기본원칙, 고려사항 등 필요 최소한의 대강만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사무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율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었는데, 굳이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없음에도 법령에서 감면율의 상한을 직접 정하고 있었습니다.

입안 방향

- ☑ 해당 사용료 감면의 경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대상자에게 수익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감면율을 법령에서 획일적으로 정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위임의 폭을 확대하였습니다.



법령상 규율 완화 및 조례 위임 확대 2

현황 및 문제점

-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노상·노외·부설 주차장 등에서 시설물의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기준을 정함에 있어 시행령상 규정되어 있는 자동차 주차대수의 10~40%에 해당하는 수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여 지방사무 운영의 탄력성이 부족하였습니다.

입안 방향

- ☑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던 것을 법률에서 직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법령상의 기준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24. 6월)하였습니다.

현행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운영) ① ~ 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법령상 규율 완화 및 조례 위임 확대 3

현황 및 문제점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등의 위반행위를 행정청에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100만원의 상한을 두고 있었습니다.

입안 방향

- ☑ 법령상 100만원으로 정한 상한액을 삭제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자치사무의 지출 운영에 대한 자치재정권을 보장할 수 있게 개정하였습니다.

종전 규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3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 ⑤ 제4항에 따른 포상금은 100만원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규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3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 ⑤ 제4항에 따른 포상금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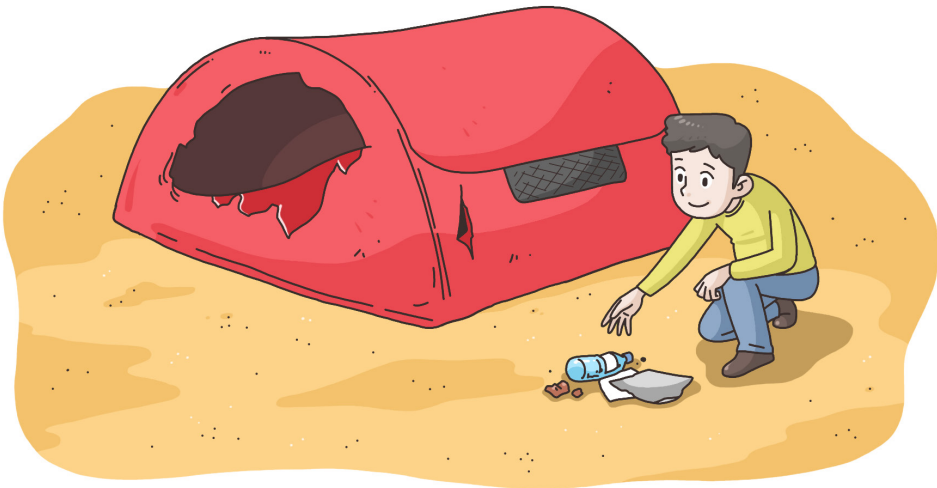
법령상 규율 완화 및 조례 위임 확대 4

현황 및 문제점

- ☑ 최근 캠핑 인구 증가로 해수욕장 시설 내 야영 및 취사용품 등의 장기간 설치·방치에 따른 국민 불편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청이 필요시 무단 설치 또는 방치된 물건 등을 직접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증대되었습니다.

입안 방향

-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위임을 받아 해수욕장 내에 무단 설치 또는 방치되어 해수욕장 관리청이 긴급하게 직접 처리해야 하는 물건등의 종류를 명시하면서 관리청이 해수욕장의 이용·관리에 지장이 있는 물건도 조례로 정하여 직접 제거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력에 더욱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법령상 규제 기준의 강화·완화



Point

- ☑ 법령상 규제 기준의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를 통해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게 하여 지방 행정 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 추진을 뒷받침합니다.



개요

- ☑ 법령상 규제 기준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상 규제 기준보다 강화 또는 완화된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법령상의 근거를 둘 수 있습니다.

침익요건의 경우 법령상 규제 기준보다 강화 또는 완화된 조례를 정할 수 있게 하려면 해당 법령에서 그 취지 및 위임범위 등의 근거를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수익요건의 경우 법령에서 전국 단위의 일률적 규율 취지를 명시하지 않는 한 별도의 규정 없이도 지원기준·대상 확대 등의 조례로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입안 사례

- ☑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단서 생략)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은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1의 시설물의 종류·규모를 세분하여 각 시설물의 종류·규모별로 강화 또는 완화의 정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④ (생략)

지방자치단체 자율적 규율 가능 사항

개요

☑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이 없더라도 주민의 권리·의무와 무관한 사항으로서 법령 및 자치법규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기술적 사항이나 집행적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자치법규를 마련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 ① 지역계획의 수립 방법 및 절차
- ② 집행적 성격의 사무 처리기준 및 절차
- ③ 지정 기준 및 절차
- ④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방법
- ⑤ 전담조직의 설치·운영 방법 등



NEW!

지자체 자율적 규율 사례 : 대행하는 자의 선정 기준

현황 및 문제점

- ☑ 평택시장이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자를 선정할 때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었습니다.

입안 방향

-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에서는 시장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조례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바, 평택시가 법령의 범위에서 정책적 목적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할 것인지 여부, 대행하는 자를 선정하는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을 것이므로,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는 자를 선정할 때 사회적기업 등에 가점을 부여하는 것이 공익성·합리성 등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면, 해당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제처 의견제시 사례 24-0267)
-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수익적 규정의 경우
법령의 범위(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조례에
정할 수 있습니다.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





Part 3

적극행정을 위한 법령정비

01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법령정비 43p

02 경제활성화 및 규제혁신을 촉진하는 법령정비 55p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9조(적극행정 법제)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검토하여 신속하게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

1.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제처장이 통보한 법령 정비안을 검토한 결과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기술 또는 환경의 변화로 법령의 개선이 필요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극행정을 위한 법령정비

1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법령 정비

명확하지 않거나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을 증진합니다.

동등한 조건임에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규정 또는 일률적인 기준으로 인해 진입장벽이 되는 규정을 정비하여 공정사회 구현에 기여합니다.



2

경제활성화 및 규제혁신을 촉진하는 법령정비

법령상 획일적인 영업규제 등을 과감하게 완화하고 신기술에 대한 규제특례를 도입하는 등 법령 정비를 통해 국민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합니다.



NEW!

사례 1: 신속한 공탁금 회수 제한 규정 신설로 피해자 보호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법령정비

정비 전 문제점

- ☑ 피고인 등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후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는 동안 공탁금을 피해자 몰래 회수해 가는 경우 이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자 보호가 미흡했습니다.

정비 방향

- ☑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하여 변제공탁을 한 공탁자는 「민법」 제489조에 따르는 경우나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에는 공탁물의 수령인으로 지정된 자가 공탁물의 회수에 동의한 경우, 공탁의 원인이 된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도록 개정하여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도록 하였습니다.

(‘24. 10. 「공탁법」 개정)

* 신속하게 정부입법으로 추진 : 입법예고(‘24.5.) → 관계기관 등 의견조회(‘24.6.) → 법제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24.7.) → 국회 통과(‘24.9.26.) → 공포(‘24.10.16)



Point

- ☑ 선의의 국민이 피해를 입는 불합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신속히 개선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사례 2: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

정비 전 문제점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 입지하는 택배화물 분류 시설의 용도와 면적에 대한 제한이 규정되어 있으나, 최근 급증한 택배수요에 따른 내부시설 및 종사자 증가 등을 고려하여 사무·휴식·관리창고 등 시설 운영에 필수적인 관리용 가설건축물의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정비 방향

- ☑ 개발제한구역 내 택배화물 분류 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관리용 가설건축물의 규모를 200㎡ 까지 확대하고, 생활물류서비스 확대 추세를 감안하여 시설규모에 비례하여 추가 설치도 가능토록 함으로써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정비 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러. 택배화물 분류 관련 시설

가) 택배화물의 분류를 위한 것으로서 고가도로의 노면 밑의 부지나 도시철도 차량기지 내 부지를 활용(토지 형질변경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경계 울타리, 컨베이어벨트 및 비가림시설의 공작물과 100제곱미터 이하의 관리용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다.

정비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러. 택배화물 분류 관련 시설

가) 택배화물의 분류를 위한 것으로서 고가도로의 노면 밑의 부지나 도시철도 차량기지 내 부지를 활용(토지 형질변경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경계 울타리, 컨베이어벨트 및 비가림시설의 공작물과 200제곱미터 이하의 관리용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택배화물 분류 관련 시설의 부지면적이 5,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면적의 1,0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 해당하는 면적만큼 관리용 가설건축물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Point

- ☑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법령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신속하게 정비를 추진해야 합니다.

NEW!

사례 3: 가족 돌봄 시에도 한시적으로 장애인 활동지원금 지급 허용

정비 전 문제점

-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활동지원금이 지급되는 장애인 활동지원 (활동보조·방문목욕 등)은 원칙적으로 가족을 대상으로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 도서·산간 등 활동지원 기관 부족 지역 등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가족 돌봄 허용

정비 방향

-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최종증 발달장애인, 희귀질환자의 경우 가족에게 활동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금 지급 기준을 2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하여 가족 돌봄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24. 5. 개정)

정비 전

제21조(가족인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법 제3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급자가 가족이 아닌 활동지원인력으로부터 활동지원 급여를 받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급자가 섬, 외딴곳 등 활동지원기관이 부족한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수급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

정비안

제21조(가족인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법 제3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급자가 가족이 아닌 활동지원인력으로부터 활동지원 급여를 받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급자가 섬, 외딴곳 등 활동지원기관이 부족한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수급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
4. 수급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최종증 발달장애인 또는 희귀질환자인 경우(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기간은 2024년 11월 1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Point

- ☑ 지원대상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관련 지원제도를 정비하여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합니다.

사례 4: 화장비누 등 1차 포장 표기의무 제외

정비 전 문제점

- ☑ 「화장품법」에 따르면 화장품의 명칭·성분 등 정보는 1차 또는 2차 포장에 기재·표시 하되 사용기한 등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1차 포장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형비누 등은 제품 특성상 건조방지를 위한 포장재를 활용함에 따라 표시사항 인쇄가 어렵고, 소비자도 통상적으로 소비자가 모든 포장을 모두 제거하고 제품을 사용하여 1차 포장에 표기의무 제도의 효과가 적었습니다.

정비 방향

- ☑ 소비자가 1차 포장을 제거하고 사용하는 고형비누 등의 화장품에 대해서는 1차 포장 표기기재 의무를 제외하도록 정비하여, 제품별 사용방식이나 포장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불필요하고 준수하기 어려운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정비 전

- 제10조(화장품의 기재사항) ① (생략)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1차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1. 화장품의 명칭
 2. 영업자의 상호
 3. 제조번호
 4.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 ③ ~ ④ (생략)

정비안

- 제10조(화장품의 기재사항) ① (생략)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1차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화장품의 1차 포장을 제거하고 사용하는 고형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화장품의 명칭
 2. 영업자의 상호
 3. 제조번호
 4.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 ③ ~ ④ (생략)

Point

- ☑ 현실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법령을 정비함으로써 정책 효과를 개선하고 국민들의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합니다.

사례 5: 상표등록출원 절차 개선

정비 전 문제점

- ☑ 「상표법」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은 하나의 상표에 1개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출원하는 것으로서 출원인이 하나의 상표에 다수의 상품을 지정하여 출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 중 일부 지정상품에만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심사관은 그 상품에 한정하여 거절결정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출원인은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도 전체에 대해 제기해야 하는 등 절차적 비효율성이 있었습니다.

정비 방향

- ☑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 중 거절이유가 있는 상품만을 거절하고, 나머지 상품은 등록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거절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거절결정 불복심판 청구 시 거절결정된 상품 중 일부에 대한 심판청구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정비 전

제54조(상표등록거절결정)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 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정비안

제54조(상표등록거절결정)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 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만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16조(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 거절결정, 지정상품추가등록 거절결정 또는 상품분류 전환등록 거절결정(이하 "거절결정"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거절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6조(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 거절결정, 지정상품추가등록 거절결정 또는 상품분류 전환등록 거절결정(이하 "거절결정"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거절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거절결정된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Point

- ☑ 복잡한 행정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국민의 상표등록 출원 기회를 확대하고 절차 비용을 낮춰 출원인의 이익을 보장하였습니다.

NEW!

사례 6: 담배 폐기확인서 제출 기한 확대 및 전자신고 도입

정비 전 문제점

- ☑ 납세자(담배 제조자, 판매자 등)는 담배를 폐기하는 경우 폐기 종료 7일 이내에 폐기 확인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한 달에 여러 번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고 담배소비세 신고·납부를 위해 공제·환급증명서를 각 시·군(최대 166개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정비 방향

- ☑ 담배 폐기 확인서 제출 기한을 폐기가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로 연장하고, 공제·환급 증명서를 총괄 서식 하나로 간편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24. 3.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Point

- ☑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비합니다.

사례 7: 다중이용업소의 범위 명확화

정비 전 문제점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营业을 말하는데, 자동차 극장 등 옥외에서 운영하는 영업장의 경우 대피로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음에도 이에 대한 별도의 예외 규정이 없어 적용여부가 불명확하였습니다.

정비 방향

- ☑ 다중이용업의 범위에서 안전시설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자동차 극장 등 옥외에서 운영하는 영업은 제외하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종전의 불합리성을 해소하고 실제 법 적용이 불가능한 업종에 대한 예외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입법 공백을 개선하였습니다.

정비 전

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营业을 말한다.

정비안

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营业을 말한다. 다만, 营业을 옥외 시설 또는 옥외 장소에서 하는 경우 그 营业은 제외한다.

Point

- ☑ 실질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예외사유를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불확실성을 해소하였습니다.

사례 8: 해외직구 시 알림서비스 제공

정비 전 문제점

- ☑ 개인의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사용빈도가 늘어나게 되고 이 통관부호를 도용하는 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체계에서는 피해자가 통관부호의 도용여부를 즉시 알 수 없고 복잡한 신고 절차로 인해 신속한 피해방지·구제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정비 방향

- ☑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관세청장은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화주에게 품명, 납부세액, 운송장번호,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등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 및 납세와 관련된 사항을 안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소비자 편의 증진 및 명의도용 방지를 위한 해외직구 통관내역 알림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정비 전

「관세법」

제254조(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관세청장은 전자문서로 거래되는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입신고·물품검사 등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정비안

「관세법」

제254조(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 등) ① ~ ③ (생략)

④ 관세청장은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화주에게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 및 납세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안내할 수 있다.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의4(전자상거래 공급망 협력)

④ 관세청장은 개인 전자상거래물품이 수입통관 되는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 또는 제출된 내역 중 품명, 과세 가격 또는 물품가격, 납부세액을 포함한 중요한 사항을 화주가 알 수 있도록 개인 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에 등록된 연락처(휴대전화번호)로 화주에게 해당 사항을 안내할 수 있다.

⑤ 관세청장은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가 개인 전자상거래물품을 구매하려는 화주로부터 통관고유부호를 제공받는 경우 해당 부호가 적정한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검증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Point

- ☑ 국민의 재산, 안전, 생명 등과 관련하여 입법공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정비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례 9: 원격대학에 일반대학원 설치 근거 마련

정비 전 문제점

- ☑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사이버대학이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등 원격대학에는 특수대학원만 설치할 수 있었고, 일반대학원이나 전문대학원은 설치할 수 없어 전문인력 양성 및 국민의 교육 수요 충족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정비 방향

- ☑ 원격대학에 일반대학원을 비롯하여 의학·치의학·한의학 및 법학 분야를 제외한 전문대학원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국민에게 보다 다양한 전문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정비하였습니다.

정비 전

제29조의2(대학원의 종류) ② 대학(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에는 일반대학원·전문대학원 또는 특수대학원을 둘 수 있고, 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에는 전문대학원 또는 특수대학원을 둘 수 있으며, 원격대학에는 특수대학원을 둘 수 있고,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에는 전문대학원이나 특수대학원 중 하나의 대학원을 둘 수 있다.

정비안

제29조의2(대학원의 종류) ② 대학(제30조에 따른 대학원 대학은 제외한다)에는 일반대학원·전문대학원 또는 특수대학원을 둘 수 있고, 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에는 전문대학원 또는 특수대학원을 둘 수 있으며, **원격대학에는 일반대학원·전문대학원(의학·치의학·한의학 및 법학 전문대학원은 제외한다) 또는 특수대학원을 둘 수 있고**,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에는 전문대학원이나 특수대학원 중 하나의 대학원을 둘 수 있다.

Point

- ☑ 국민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법령을 정비합니다.

사례 10: 대안학교 등 졸업자에 대한 동등 학력 인정

정비 전 문제점

- ☑ 「공무원임용령」에서는 고등학교, 전문대학 및 대학 등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국가공무원이 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에서는 일정 분야의 전문계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자”로만 규정하고 있어,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취득한 대안학교 졸업자의 시험 응시 기회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정비 방향

-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에 명확하게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정비 전

- Ⅱ. 임용시험
3. 경력경쟁채용시험
나. 요건
(2) 법 제28조 제2항 제9호
(나) 선발기준 및 임용예정계급
① 선발대상
㉞ 전국의 전문계고등학교·전문대학 및 대학(대학원 포함)에서 농업·공업·광업·수산·해양·보건위생·가사실업계통의 학과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물리·화학·생물계통의 학과, 음악·미술계통의 학과, 역사·고고인류학 계통의 학과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민속학 계통의 학과를 **졸업한 자**

정비안

- Ⅱ. 임용시험
3. 경력경쟁채용시험
나. 요건
(2) 법 제28조 제2항 제9호
(나) 선발기준 및 임용예정계급
① 선발대상
㉞ 전국의 전문계고등학교·전문대학 및 대학(대학원 포함)에서 농업·공업·광업·수산·해양·보건위생·가사실업계통의 학과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물리·화학·생물계통의 학과, 음악·미술계통의 학과, 역사·고고인류학 계통의 학과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민속학 계통의 학과를 **졸업한 자(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

Point

- ☑ 동등한 능력 및 학력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법령을 정비하여 공정사회 구현에 기여합니다.

사례 11: 청소년 합창단 단원 자격 중 '재학' 요건 삭제

정비 전 문제점

- ☑ 「〇〇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조례」에서는 소년소녀합창단 일반단원의 자격을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재학 중인 학생이라고 규정하여, 같은 나이임에도 홈스쿨링을 하거나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기회를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정비 방향

- ☑ 지자체 내 청소년들이 동등하게 지방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생'이라는 자격요건을 삭제하였습니다.

정비 전

- 제5조(단원의 자격과 위촉) ① (생략)
 ② 일반단원은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③ (생략)

정비안

- 제5조(단원의 자격과 위촉) ① (생략)
 ② 일반단원은 8세 이상부터 18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③ (생략)

Point

- ☑ 청소년의 다양한 유형을 고려하여 불합리한 진입장벽을 없앴으로써 공정사회 구현에 기여합니다.

사례 12: 국가배상 기준 산정 기준상의 차별 해소

정비 전 문제점

- ☑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따르면 재판 및 국가배상심의회에서 국가배상액 산정 시 병역 의무 대상인 남성의 경우, 그 복무기간을 일일이익 계산을 위한 취업가능기간에서 제외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동일한 사건으로 사망 또는 상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피해남학생들의 군복무 예정기간이 취업가능기간에서 제외되면 피해여학생들에 비하여 배상금이 적게 책정되는 등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정비 방향

- ☑ 취업가능기간에서 제외되던 '군 복무 가능성이 있는 남성'의 군복무기간을 취업가능 기간에 전부 산입하도록 개정하여 차별적 요소를 정비하였습니다.

정비 전

제2조(취업가능기간과 신체장해의 등급 및 노동력 상실률등) ①법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 가능 기간은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주관적 요소와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 사회적·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되, 피해자가 남자인 경우에는 사고 당시 병역법상 군복무기간, 피해자의 군복무 가능성, 복무기간 조정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한 기간으로 하고,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은 별표 2와 같다.

② ~ ④ (생략)

정비안

제2조(취업가능기간과 신체장해의 등급 및 노동력 상실률등) ① 법 제3조제6항에 따른 취업가능 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간으로 하되, 피해자가 군 복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군 복무 기간을 취업가능기간에 전부 산입하고,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은 별표 2와 같다.

1.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피해자의 주관적 요소
2.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 사회적·경제적 여건

② ~ ④ (생략)

Point

- ☑ 성별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공정사회 구현에 기여합니다.

NEW!

사례 1: 조업 여건에 맞춘 어선 위치통지 제도의 합리적 개선

경제활성화 및 규제혁신을 촉진하는 법령정비

정비 전 문제점

- ☑ 종전에는 각 해역별로 일정 시간 이상의 간격(특정해역 6시간, 조업자제해역 8시간, 일반해역 12시간)으로 1일(출항시각을 기준으로 매 24시간) 1회~3회(특정해역 3회, 조업자제해역 2회, 일반해역 1회) 위치통지를 하고, 그와 별도로 태풍 또는 풍랑 특보가 발효된 경우 특보발효시각을 기준으로 4시간 또는 12시간 간격으로 추가 위치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어선의 위치통지 방법이 복잡하고, 횟수가 과도하여 어선사고 예방이라는 실질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어업인들이 취침시간과 조업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정비 방향

- ☑ 일정 시간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위치를 통지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어업인들의 어업활동에서의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24.10.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



Point

- ☑ 경제 활동에 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법령을 신속하게 정비하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엄밀한 검토를 반드시 거치도록 합니다.

N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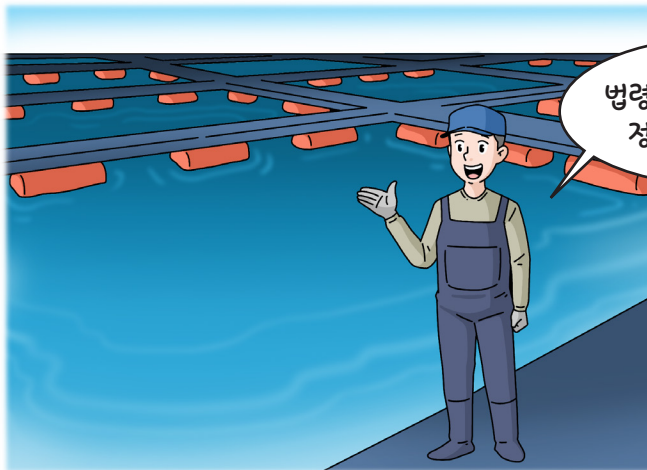
사례 2: 영업기준상 시설·장비 확보 부담 완화

정비 전 문제점

- ☑ 「어장관리법 시행령」 등에서는 법령상 영업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임차·공유 허용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임차·공유를 허용하고 있지 않아 창업·영업에 비용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정비 방향

- ☑ 소상공인 등이 창업할 때 시설이나 장비를 갖추는 데 드는 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임차계약이나 공동사용계약을 통해 영업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영업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도록 개선했습니다. ('24. 11. 「어장관리법 시행령」 등 22개 법령 개정)



Point

- ☑ 창업이나 시장 진입에 부담이 되는 법령을 신속하게 정비하여 경제활성화를 촉진합니다.

NEW!

사례 3: 교육이수 부담 완화

정비 전 문제점

- ☑ 「수도법 시행령」 등에서는 질병·부상 등으로 부득이 교육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도 교육 이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정비 방향

- ☑ 질병·부상 등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교육 이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 교육 근거를 마련하는 등 소상공인 등에 대한 법정 교육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교육 부담을 줄이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24. 11. 「수도법 시행령」 등 26개 법령 개정)



Point

- ☑ 영업 활동에 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법령을 신속하게 정비하여 경제활성화에 기여합니다.

사례 4: 석면환경센터 지정 관련 실적요건 완화

정비 전 문제점

-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석면환경센터로 지정받으려면 석면환경센터 지정 신청서에 앞으로의 사업계획서, 자원 조달계획 뿐만 아니라 그간의 석면 분야 사업 추진 실적 등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어 일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해왔습니다.

정비 방향

- ☑ 석면환경센터 지정 신청서의 첨부서류 중 석면 분야 사업 추진 실적을 의무 제출사항이 아닌 임의 제출사항으로 변경하여 기존에 석면 분야에서의 사업 추진 실적이 없더라도 법령상의 요건만 갖춘 경우에는 석면환경센터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입법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4조(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절차) ① (생 략)

②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석면환경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환경센터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생 략)

2. 석면 분야의 조사·연구·기술개발 실적 또는 관련 사업 추진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 6. (생 략)

③ ~ ⑤ (생 략)

NEW!

사례 5: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벌채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정비 전
문제점

- ☑ 상수원보호구역 중 지목이 전·답인 토지에서 휴경하였다가 농사를 재개할 때 자연적으로 나무가 우거진 부분에 대해 수시로 벌채가 필요하나, 허용되지 않아 경작에 불편이 있었습니다.

정비
방향

- ☑ 지목이 전·답인 토지에서의 농작물 경작을 위한 입목 및 대나무의 벌채를 신고행위로 규정하여 경작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24. 8. 「수도법 시행령」 개정)



Point

- ☑ 토지를 원래의 목적의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경작 등 경제 활동에서의 불편을 경감합니다.

사례 6: 골재채취업자의 기술인력 관련 등록기준 일시적 미달

정비 전 문제점

- ☑ 「골재채취법 시행령」에 따라 골재채취업자가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인해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재처분이 유예되었으나, 그 기간이 더 길어지는 경우 일정한 기간의 영업 정지나 등록 취소 등 제재처분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정비 방향

- ☑ 골재채취업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제재처분이 유예되는 기간을 180일까지로 확대하여 기술인력의 고용에 어려움을 겪던 사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정비 전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4조의2(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법 제19조제1항 제4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별표 1에 따른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 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정비안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4조의2(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법 제19조제1항 제4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별표 1에 따른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 되는 기간이 **50일(「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180일)** 이내인 경우

사례 7: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 인증 관련 실시주기 완화

정비 전 문제점

- ☑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 인증에 대한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HACCP 인증 후에는 매년 정기 조사·평가를 실시함에도 인증 연장 신청 시 추가적인 조사를 예외 없이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업자는 반복적인 행정조사에 따른 행정절차적 부담을 겪어왔습니다.

정비 방향

- ☑ HACCP 인증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매년 실시하는 정기 조사·평가 결과가 우수한 업체는 유효기간 연장에 필요한 별도의 조사를 받지 않는 등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24. 7월)하였습니다.

정비 전

「식품위생법」

제48조의2(인증 유효기간) ① 제48조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 인증의 유효기간은 당초 인증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생략)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연장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안전관리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비안

「식품위생법」

제48조의2(인증 유효기간) ① 제48조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4년**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 인증의 유효기간은 당초 인증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생략)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연장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거나 제48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조사·평가 결과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4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Point

- ☑ 불필요한 행정절차의 중복을 없애고 국민들의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불합리한 법령을 정비합니다.

사례 8: 음식점 옥외 영업장의 조리행위 원칙적 허용

정비 전 문제점

- ☑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옥외 조리 영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관광 특구지역 또는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장소 중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어 그 외에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적은 장소에서는 조리행위가 원칙적으로 불가하여 규제 합리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정비 방향

- ☑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관광특구 지역이 아닌 경우에도 주거지역과 인접하지 않아 환경 위해 우려가 적은 지역에서는 식품접객업자가 건물 외부에서 조리·제조한 음식을 건물 외부의 영업장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정비 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1. ~ 6. (생략)

7. 식품접객업자(위탁급식영업자는 제외한다)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가. ~ 고. (생략)

노. 휴게음식점영업자·일반음식점영업자 또는 제과점영업자는 건물 외부에 있는 영업장에서는 조리·제조한 음식류 등만을 제공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소·지역 중 주거지역과 인접하지 않아 환경 위해 우려가 적은 장소·지역으로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별도의 안전기준을 정한 경우는 건물 외부에서 조리·제조한 음식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장소

2) 「관광진흥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 지역

정비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1. ~ 6. (생략)

7. 식품접객업자(위탁급식영업자는 제외한다)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가. ~ 노. (생략)

도. 휴게음식점영업자·일반음식점영업자 또는 제과점영업자는 건물 외부에 있는 영업장에서는 건물 내부에서 조리·제조한 음식류 등만을 제공해야 한다. 다만, 주거지역과 인접하지 않아 환경 위해 우려가 적은 장소·지역으로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별도의 기준을 정한 경우는 건물 외부에서 조리·제조한 음식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Point

- ☑ 영업 활동에 지나친 부담을 주는 경우에는 형평성, 공익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신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 9: 발파작업 안전 관련 낡은 기준 개선

정비 전 문제점

- ☑ 일선 발파 현장에서의 근로자 안전과 직결되는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의 경우 1994년에 제정한 후 주요 내용에 변화가 없었던 반면 새로운 발파방법 및 관련 기술 등이 개발·보급되어 이미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어 규정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발생하였습니다.

정비 방향

- ☑ 현장에서 쓰이지 않는 “도화선발파” 등 낡은 규정을 삭제하고, 비교적 안전한 발파방법인 “비전기발파”, “전자발파” 사용에 관한 안전기준을 포함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정비 전

제3장 도화선 발파

제1절 발파준비 및 발파

제19조(발파용 기재) 도화선 발파작업을 할 때에는 발파용 기재는 다음 각 호 사항의 것들을 준비하여야 한다.

1. ~ 10. (생략)

제20조(발파방법 결정) 도화선발파를 할 때의 발파방법은

그 목적에 따라 각각 다르므로 현장의 상황 등에 의해 단독발파, 동시발파, 단발발파 등 발파방법의 채택여부를 사전에 결정하여야 한다.

정비안

제2절 비전기발파

제22조(작업 순서) 비전기발파 작업은 천공, 장약, 결선 (비전기기관에 표면연결기관 또는 번치커넥터 연결), 연결상태 등 회로점검, 근로자 대피, 발파기와 스타터 기관의 연결, 기폭, 발파결과 확인의 순서로 시행한다.

제3절 전자발파

제27조(작업 순서) 전자발파 작업은 천공, 장약, 결선, 초시 입력, 회로점검 테스트, 근로자 대피, 발파기와 발파모션 연결, 통신상태 점검, 기폭, 발파결과 확인의 순서로 시행한다.



Point

- ☑ 특히 국민의 안전이나 생명과 관련된 분야의 경우에는 입법 공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정비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례 10: 졸업 전 경력에 대한 인정

정비 전 문제점

- ☑ 유치원에서 유아교육을 담당하거나 보조하는 유치원 강사, 기간제 교사 등으로 취업하기 위해서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에 쌓은 2년 이상의 유아교육 관련 실무경력이 필요한데, 이는 일과 학업을 병행하거나 취업한 후에 진학하는 구직 청년 등에게 상대적으로 불합리한 규정이었습니다.

정비 방향

- ☑ 전문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쌓은 관련 실무경력도 졸업한 후에 쌓은 경력과 동등하게 인정하도록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유치원 강사 등의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취업 준비기간을 줄이고 다양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정비 전

「유아교육법 시행령」 별표 1

구분	자격 기준
강사	1. (생략)
	2.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유아교육과 관련되는 분야에서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생략)

정비안

「유아교육법 시행령」 별표 1

구분	자격 기준
강사	1. (생략)
	2.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유아교육과 관련되는 분야에서 2년 이상의 실무경력(졸업 또는 학력 인정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3. (생략)

Point

- ☑ 일과 학업을 병행하거나 취업하여 실무경력을 쌓고 나중에 대학에 진학하는 청년 등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위 취득 전의 실무경력도 학위 취득 후의 실무경력과 동등하게 인정하도록 정비하는 등 청년의 기회를 확대하여 공정과 상식의 회복에 기여합니다.

사례 11: 규제샌드박스 관련 신속 처리절차 도입

정비 전 문제점

- ☑ 규제샌드박스* 신청 내용이 종전에 규제특례를 부여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사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도 새로운 신청의 경우 새롭게 절차를 밟아야 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신기술 시도가 가능하도록 안전성, 유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임시허가, 실증특례 등의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제도

정비 방향

- ☑ 종전에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규제특례 등을 부여받은 경우와 동일·유사한 경우에는 신속처리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24. 7. 「산업융합 촉진법」 국회 제출)

정비안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① ~ ⑦ (생 략)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내용이 종전에 규제특례를 부여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내용·방식·형태 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 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결과 회신기간 : 15일 이내로 단축
- 제5항에 따른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상정 및 제6항에 따른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 : 전문위원회에 상정 및 전문위원회의 심의. 이 경우 전문위원회는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⑨ ~ ⑭ (생 략)

신제품에 대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

규제 샌드박스란?



Point

- ☑ 규제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제도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합니다.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





Part 4

적극행정을 위한 법령해석

- 01** 입법 공백 시 국민 편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석 69p
- 02** 규제 등 침익요건에 대한 불필요한 확대 적용 금지 77p
- 03** 허가 등 수익요건에 대한 축소해석 금지 85p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9조(적극행정 법제)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법령을 해석할 때에는 법령의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법령의 취지를 벗어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적극행정을 위한 법령해석

1

입법 공백 시 국민 편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석

관련 규정이 없거나
애매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법령의 취지,
제3자 피해 가능성, 공익상 필요성 및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국민 편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석합니다.



2

규제 등 침익요건에 대한 불필요한 확대적용 금지

규제 또는 의무 부과 규정이
명확하게 존재하는 경우, 문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거나 법령의 정의규정이나 사전적의미,
헌법적 가치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드시 규제가 필요한 경우로
한정 해석합니다.



3

허가 등 수익요건에 대한 축소해석 금지

허가 등 수익요건을 해석하는 경우,
요건 해당 여부를 문언의 의미보다 과도하게
축소하거나 사실상 요건을 추가하는 식으로
해석하여 국민이 권익을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사례 1: 가스 재공급

입법 공백 시 국민 편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석

해석 쟁점

- ☑ A 회사에서는 액화천연가스를 이용하여 저온을 유지하는 냉동물류창고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액화천연가스를 통해 냉동물류창고의 냉열을 조절하는 과정에서는 불가피하게 기화가스가 발생합니다. A 회사에서는 이러한 기화가스를 냉동물류창고와 동일한 부지에 있는 자회사 B에 공급·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구 「도시가스사업법」에서는 가스공사가 가스 수요자에게만 가스를 공급하도록 하고 있을 뿐, 가스공사로부터 가스를 공급받은 자가 제3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A 회사가 하려는 행위가 허용 가능한지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해석

- ☑ 구 「도시가스사업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의 효율적 운영 및 안전관리 측면을 고려할 때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한 후, 동일 부지 내에 있는 자회사에 판매 마진 없이 공급하는 것을 허용하였습니다.

해석 방향

해석 후 관련 규정 신설

「도시가스사업법」

제8조의4(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의 천연가스 처분제한)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는 냉열이용과정에서 발생되는 천연가스를 자기가 소비하거나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에게만 처분할 수 있다.

3.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가 주식 또는 지분의 과반수를 소유한 자로서 냉열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천연가스를 공급받아 자기가 소비하려는 자

Point

- ☑ 입법 공백이 있더라도, 법령의 취지가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행위를 허용합니다.

NEW!

사례 2: 학교 밖 '거점형 늘봄센터'에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 발급

해석 쟁점

- ☑ 교육부고시로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인 “학교 밖 거점형 늘봄센터”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 명시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대상 시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학교 밖 거점형 늘봄센터에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되었습니다.

해석 방향

※ 경찰청 해석

- ☑ 향후 법령 개정을 전제로, 학교 밖 거점형 늘봄센터 4개소에 신고증 총 11건을 발급하는 등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3. “어린이통학버스”란 다음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사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을 제외한다)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 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유아교육진흥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및 외국인학교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 및 교습소

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제외한다)

바.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한다)

아.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

자. 「평생교육법」에 따른 시·도평생교육진흥원 및 시·군·구평생학습관

차.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① 어린이통학버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운영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Point

- ☑ 입법공백이 있는 경우, 법령의 취지, 제3자의 피해가능성, 공익상 필요성,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해석하고, 명확한 법령 집행을 위해 법령 정비가 필요한 사항인지 검토하여, 법령 정비를 추진해야 합니다.

사례 3: 항공운송약관의 비치 형태

해석 쟁점

- ☑ 「항공사업법」에서는 항공교통사업자는 운송약관 등의 서류를 영업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항공교통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두고, 항공교통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공교통사업자가 운송약관 등을 종이문서로 비치하지 않고 태블릿 등의 전자기기를 비치하여 운송약관 등의 서류를 전자적 형태로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었습니다.

※ 법제처 해석례 22-0116

해석 방향

- ☑ 운송약관 등의 비치 장소로 인터넷 홈페이지도 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반드시 종이문서로 비치하도록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전자문서에 적용되고, 전자문서가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례의 운송약관 등은 반드시 종이문서로만 비치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태블릿 등의 전자기기를 비치해 두고 전자문서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Point

- ☑ 입법공백 시 해석대상 법령 내 다른 조문뿐만 아니라 다른 법령과의 관계까지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조화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NEW!

사례 4: 한정마을어업면허 재발급 대신 면허기간 연장

해석 쟁점

- ☑ 「수산업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한정마을어업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기간 만료 이후에도 마을어업을 계속하려는 경우, 「수산업법」 제7조에 따라 다시 새로운 면허 신청을 하는 대신 그 면허기간 만료 전 면허기간 추가 부여 신청을 하고 그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 면허기간을 추가로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이 있었습니다.

※ 법제처 해석례 23-0925

해석 방향

- ☑ 「수산업법」에는 한정마을어업면허의 면허기간을 추가로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한정마을어업면허는 공익상 사유로 어업이 제한되는 수면에서 일정기간 어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처분이라는 점에서 일반어업면허와 같이 특정인에게 일정기간 동안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재량행위이라고 할 것인바, 그 면허의 기준을 정하는 것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면허기간을 추가 부여하는 것이 법령에 합치되지 않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한, 시장·군수·구청장은 한정마을어업면허의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라면 당초 한정마을어업면허의 '면허기간을 정하여' 면허를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그 '면허기간을 추가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Point

- ☑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행정행위의 법적 성격, 해당 조문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국민 편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석합니다.

사례 5: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의 창고 위치

해석 쟁점

- ☑ 동물용 의약품 도매업 허가에 관하여 「약사법」 및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에서는 “영업소와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영업소와 창고가 동일한 시·군·구 내에 있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영업소 소재지에 창고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영업소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창고가 관할구역 밖에 있더라도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 법제처 해석례 22-0039

해석 방향

- ☑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허가 신청 시 창고를 갖추도록 한 규정의 취지는 판매하려는 동물용 의약품의 보관에 필요한 시설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취지일 뿐 영업소와 창고의 소재지가 동일한 시·군·구에 있는 경우에만 허가하려는 취지로 볼 수 없는 바, 명문의 규정 없이 창고가 허가관청의 관할구역 밖에 있다는 사유로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Point

- ☑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령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국민의 편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석합니다.

NEW!

사례 6: 간이통관(부과고지)된 우편물을 관세 환급 대상으로 해석

해석 쟁점

- ☑ 간이통관(부과고지)된 우편물*이 관세 환급 대상인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 사용물품'에 해당되어, 관세 환급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었습니다.

* 우편으로 반입되는 물품가격 미화 1천달러 이하인 자가사용물품은 수입신고가 아닌 세관장이 직접 세액을 부과고지하는 형태로 과세

※ 관세청 해석

- ☑ 개인 해외직구 물품 배송경로는 대부분 해외발송자 선택에 따라 결정되는데 동일한 물품임에도 반입경로에 따른 납세방식 차이로 인해 우편물에 대한 환급 불허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고, 우편물 부과고지 내역으로도 수입통관 및 납세내역 사실확인이 가능하므로, 간이통관(부과고지)된 우편물도 환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해석 방향

「관세법」

제106조의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이 경우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 3. (생략)



우편물도 관세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어요!

Point

- ☑ 입법공백이 있는 경우, 법령의 취지, 제3자의 피해가능성, 공익상 필요성,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해석하고, 예측가능하고 명확한 법령 집행을 위해 법령 정비가 필요한 사항인지 검토하여, 법령 정비를 추진해야 합니다.

사례 7:

어린이집 영양사와 간호사에 대한 장기근속 수당 지급 가능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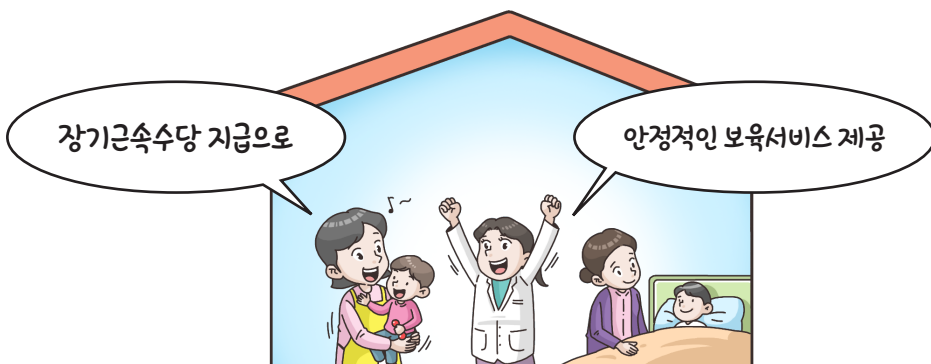
해석
쟁점

-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육교사의 인건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보육교사에 대한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 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어린이집에 각 1명 이상 배치해야 하는 영양사와 간호사의 경우에는 수당지급을 위한 지원 근거가 없어 장기근속 수당 지급이 어려웠습니다.

※ 보건복지부 해석(성남시 규제개선 건의)

해석
방향

- ☑ 성남시에서는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 규제 건의를 하여 관련 규정의 개정 없이도 지자체 장이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지원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고, 이에 따라 장기근속 수당 지급 대상자에 영양사, 간호사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직원들의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고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Point

- ☑ 형평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법령을 해석합니다.

사례 1: 기간통신사업자의 사업 시작 의무

규제 등 침익요건에 대한 불필요한 확대 적용 금지

해석 쟁점

- ☑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는 사업 시작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기업이 해저케이블 구축 등 장기적인 사업 준비를 위해 사업을 시작하기 1년을 초과한 기간 전에 미리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사업 시작 의무를 준수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었습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석

해석 방향

- ☑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사업 시작 의무는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의 의무 위반과 그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일뿐, 아직 등록하지 않은 자가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다른 기간통신사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사업 시작 의무를 준수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등록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Point

- ☑ 침익요건은 문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NEW!

사례 2: 환경보전방안을 변경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해야 하는 사업자의 범위

해석 쟁점

-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3조의2제1항제2호 본문의 사유에 해당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변경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하는 “사업자”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제11호나목(사업자가 승인등을 받은 필지와 동일한 필지에서 동일한 사업의 승인등을 받으려는 자) 및 다목(필지가 분할된 후 3년 이내에 분할된 필지에서 동일한 사업의 승인등을 받으려는 자)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되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었습니다.

※ 법제처 해석례 24-0656

해석 방향

- ☑ 「환경영향평가법」 제46조의2제1항에서는 변경협의를 주체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완료한 사업자’로 한정하고 있는바, 협의를 완료한 지역과 연접하는 지역으로서 협의를 완료한 지역의 필지와 동일한 필지 또는 필지가 분할된 후 3년 이내에 분할된 필지에서 동일한 사업의 승인등을 받으려는 ‘제3자’가 **‘협의를 완료한 사업자’에 포함된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3조의2제1항제2호 본문에서도 사업의 승인등을 받으려는 ‘제3자’가 실시하려는 사업의 면적을 **‘협의를 완료한 사업자’의 협의 내용에 포함된 사업규모의 증가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제11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제3자’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명시적인 근거 없이 규제를 강화하는 해석이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해석하였습니다.

Point

- ☑ 규제의 대상 등은 그 근거가 되는 법령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고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NEW!

사례 3: 구급차등 운용신고 수리 시 이송업 허가의 영업지역 제한 규정 준용 가능 여부

해석 쟁점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기관의 구급차등 운용신고를 수리할 때 같은 법 제51조제2항을 준용하여 운용지역을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었습니다.

※ 법제처 해석례 24-00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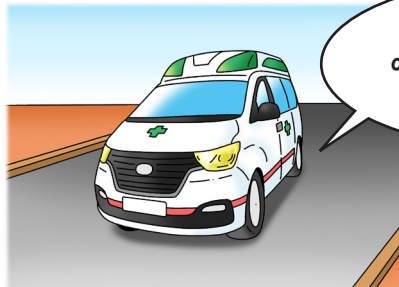
해석 방향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은 운용지역 제한에 대한 규정인바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로서 엄격하게 해석하여, 같은 법 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기관의 구급차등 운용신고를 수리할 때 같은 법 제51조제2항을 준용하여 운용지역을 제한할 수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구급차등의 운용신고 등)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51조(이송업의 허가 등)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영업지역을 제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구급차등의 운용신고 시
이송업 영업지역 제한 규정
확대 적용 불가!

Point

- ☑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NEW!

사례 4: 안전표지 해당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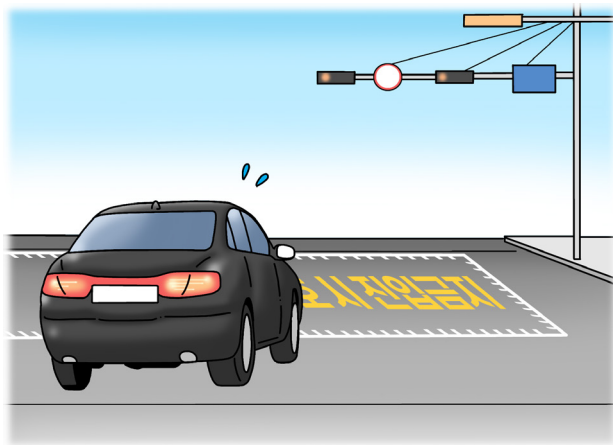
해석 쟁점

- ☑ 시장등이 신호기와 정지선표시가 설치된 곳에 「도로교통법」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표지(노면표시)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 Ⅱ 제5호에 따른 '정차금지대표시'를 설치하면서, 그 '정차금지대표시' 구획 속 노면에 '정지신호 시 진입금지'라는 문구를 자율적으로 표시한 경우, '정지신호 시 진입금지' 표시가 그 자체로 차마 운전자의 '정지신호 시 정차금지대표시 구획으로의 진입금지'를 지시하는 안전표지(노면표시)에 해당하여 그 지시를 따를 의무가 발생하는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 법제처 해석례 23-1140

해석 방향

- ☑ 차마의 운전자에게 신호등의 신호, 정지선표시 및 정차금지대표시에 따르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시장등이 자율적으로 표시한 '정지신호 시 진입금지'까지 따라야 하는 것으로 확장 또는 유추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바, '정지신호 시 진입금지' 표시는 그 자체로 차마 운전자에게 지시하는 안전표지(노면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Point

- ☑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지 않도록 합니다.

사례 5: 영업장 바닥면적의 범위

해석 쟁점

- ☑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영업은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에 해당하게 되는데, 다중이용업에 해당하게 되면 영업장에 안전시설 등을 설치·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A구청은 관할 구역 내 한 건물 꼭대기층에서 단독으로 영업하는 일반음식점의 바닥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해당 층의 복도와 계단은 그 일반음식점만 사용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들 면적까지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었습니다.

※ 법제처 해석례 23-0149

해석 방향

- ☑ 관련 법령의 문언상 일반음식점영업의 “영업장”은 음식류의 조리·판매가 이루어지는 조리장, 객실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그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 있는 장소이므로, 이 영업과는 무관한 복도와 계단은 다중이용업 해당 여부에 대한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용 계단 및 복도가 일반음식점 영업의 영업장으로 이용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명문의 근거도 없이 영업 시설과 분리된 공용 계단 및 복도까지 영업장에 포함된다고 확대해석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Point

- ☑ 규제대상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해당 대상에만 규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합니다.

사례 6: 영업 폐쇄의 범위

해석 쟁점

- ☑ 낚시어선업자 A는 총 4대의 낚시어선을 보유하고면서 각각 별도의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하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 한 대의 낚시어선업 신고 유효기간이 경과 하였으나 계속 4대의 낚시어선으로 낚시어선업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행정청이 영업 폐쇄를 명하려는 경우 영업 폐쇄의 범위가 미신고 낚시어선의 영업에만 한정 되는지, 아니면 낚시어선업자 A가 신고한 다른 낚시어선의 영업도 포함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 법제처 해석례 23-0031

해석 방향

- ☑ 「낚시의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르면 낚시어선업의 신고는 낚시어선을 기준으로 이루어 지고, 이에 따라 신고한 낚시어선업의 유효기간도 낚시어선마다 각각 적용되므로, 낚시 어선업자가 동일인이라고 해도 낚시어선업이 각각 개별적으로 적합하게 신고된 경우 에는 귀책사유가 있는 낚시어선의 낚시어선업에 대해서만 영업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Point

- ☑ 행정처분 대상과 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침익요건을 확대해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사례 7: 확성기소음의 규제 대상 여부

해석 쟁점

- ☑ 도시공원의 야외 잔디밭에서 가끔 열리는 일회성 공연에서 확성기를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강한 소리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생활소음의 규제대상이 되는 확성기소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해석 방향

※ 법제처 해석례 23-0332

- ☑ 「소음·진동관리법」에서는 생활소음의 규제대상을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처럼 규제대상 생활소음원으로 '사업장 및 공사장 등'을 예시사항으로 열거한 것은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생활소음을 발생시키는 원인을 사업장·공사장과 같이 일정기간 동안 사업 등을 영위하면서 지속적으로 소음을 발생시키는 경우로서 그 소음을 규제기준(데시벨) 이하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인지의 여부 및 생활소음으로서의 성질'과는 무관하게 확성기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소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확장해석입니다.

해석대상 법령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음(騒音)”이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①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산업단지나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제외하며, 이하 “생활소음·진동”이라 한다)을 규제하여야 한다.

Point

- ☑ 규제 규정을 해석하는 경우에는 문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법령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반드시 규제가 필요한 경우로 한정해서 해석해야 합니다.

사례 8: 방유제 설치 대상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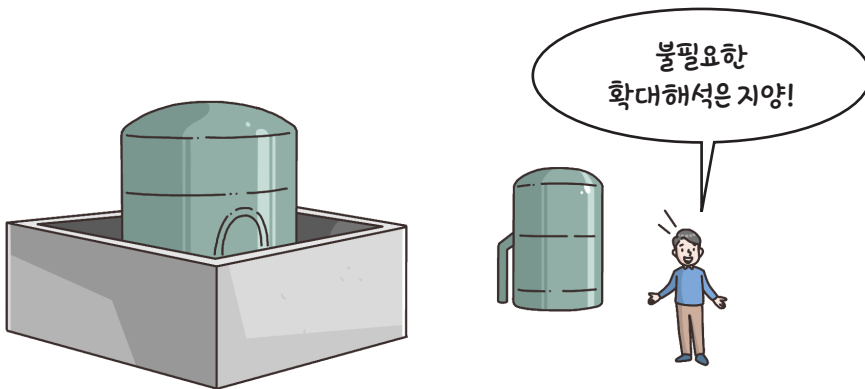
해석 쟁점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2조에 따르면 독 모양의 구조물로 위험물을 액체 상태로 저장하는 저장탱크를 설치하는 경우 위험물이 누출되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유제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반도체 제조·생산설비에 부착된 화학물질 공급·이송·혼합탱크도 저장탱크로 보아 방유제를 설치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어 기업들이 혼선을 빚는 등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 고용노동부 해석

해석 방향

- ☑ 실내 제조·생산시설에 설치되어 공급·이송·혼합 용도로 사용되는 중간탱크는 **저장이 아닌 취급탱크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취급탱크의 경우 용량이 작아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점, 트렌치, 방유탕(높이 15cm) 등의 방호조치로도 위험예방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유제 설치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하였습니다.



Point

- ☑ 국민의 권익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은 가급적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음으로써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낮출 수 있도록 합니다.

3

허가 등
수익요건에 대한
축소해석 금지사례 1:
상속세 공제 대상해석
쟁점

- ☑ B씨는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습니다. 11년 전에 해당 주택에 전세로 입주하였는데, 집이 마음에 들어 5년 전 큰 마음을 먹고 해당 주택을 구입하였습니다. B씨의 아들인 A씨는 해당 주택에 처음 입주할 때부터 지금까지 B씨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안타깝게도 B씨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B씨는 일찍 사별하여 배우자가 없던 터라, B씨의 재산은 모두 A씨에게 상속되었습니다.

그런데 B씨와 함께 살던 주택을 상속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주택이 동거인에게 상속된 경우 사망자와 상속인이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하여 동거”하면 상속세를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B씨가 실 소유한 기간이 10년이 되지 않으므로 상속세를 공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국세청 해석

- ☑ 공제 여부는 문언에 따라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주택에서 10년 이상 거주했는지만 검토하면 되지, 해당 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10년 이상인지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석
방향

Point

- ☑ 문언에 명시된 요건을 해석하면서 사실상 다른 요건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사례 2: 신규 주류 물류센터 면허 요건을 합리적으로 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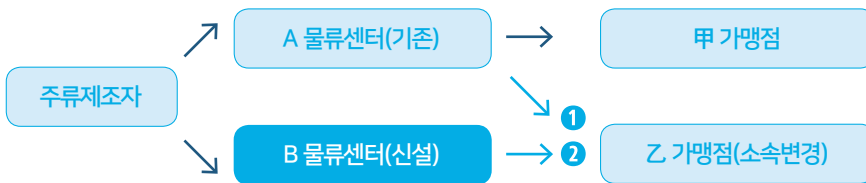
해석 쟁점

-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규 주류 물류센터 면허 요건인 “6개월간 주류 외 상품 공급실적”을 기존 물류센터의 공급실적이 있는 편의점 본사(체인사업자)에 대해 판단하는 경우, 신설된 물류센터의 상품 공급실적만을 인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 물류센터의 상품 공급실적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 기획재정부 해석

해석 방향

- ☑ 해당 면허취득 요건은 부실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막기 위한 취지이나, 건설한 기존 편의점 본사의 추가 물류센터에 대해서도 신규사업자와 동일한 요건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편의점 본사(체인사업자)의 경우 기존 물류센터의 상품 공급실적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하였으며, 향후 법령 집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조문 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Point

- ☑ 허가 등 수익요건을 해석하는 경우, 요건에 부합하는 대상을 과도하게 축소하는 해석 방식은 지양해야 하며, 예측가능하고 명확한 법령 집행을 위해 법령 정비가 필요한 사항인지 검토하여, 법령 정비를 추진해야 합니다.

NEW!

사례 3: 화재로 인한 제조시설 전소의 경우 소공정 위탁 허용

해석 쟁점

- ☑ 화재로 식품제조 가공업자 A의 제조·가공시설이 전소되어 피해복구 시점까지 전공정을 위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는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의 “제조·가공 시설 등이 부족한 경우”로서 영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하여 위탁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석

해석 방향

- ☑ 종전에는 위탁생산 품목에 대한 제조시설 전부가 없거나 제조시설은 있으나 생산하지 않는 경우는 “제조·가공시설 등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적으로 해석하였으나, 불가항력적 사유(화재 등)로 제조·가공 시설이 전소되어 타 업체에 위탁·제조하고자 하는 경우, 피해복구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공정을 위탁하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위탁 가능한 것으로 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업종별시설기준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제조·가공시설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자에게 위탁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할 수 있다.



Point

- ☑ 허가 등 수익요건을 해석하는 경우, 법령의 취지,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수익 대상이 과도하게 축소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NEW!

사례 4: 항만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준설에 대한 허가 통지 기한

해석 쟁점

- ☑ 「항만법」 제9조제4항 본문에서는 항만개발사업(항만시설의 신설·개축·보강·유지·보수(補修) 및 준설 등을 하는 사업) 허가의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항만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준공된 항만시설인 항로·정박지 등을 “유지하기 위한 준설”이 같은 항 단서의 적용대상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였습니다.

※ 법제처 해석례 24-0517

해석 방향

- ☑ 준공된 항만시설인 항로·정박지 등을 유지하기 위한 준설은 「항만법」 제9조제4항 단서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으로써 해당 허가 신청에 대한 관리청의 통지를 “14일 이내”에 하도록 하였습니다.

「항만법」

제9조(항만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④ 관리청은 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항만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유지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은
14일 이내 허가 통지



유지하기 위한
준설의 경우에도
14일 이내 허가 통지

Point

- ☑ 신속한 허가 절차 등 수익적 처분의 경우 그 요건을 문언의 의미보다 축소하여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NEW!

사례 5: 산지 전용 또는 일시사용 요건

해석 쟁점

-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13호에서는 '지역등으로 지정·결정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산지를 전용 또는 일시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부지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은 매년 산림청장이 발표하는 임업통계연보상의 해당 시·군·구의 산지면적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보전산지의 면적 비율이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사업계획부지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 비율'은 '전체 사업계획부지의 면적'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로 산정하는지, 아니면 '전체 사업계획부지 중 산지의 면적'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로 산정하는지 불분명 하였습니다.

※ 법제처 해석례 23-0644

해석 방향

- ☑ 해당 규정에서 '사업계획부지에 대한 보전산지 면적비율'을 산정할 때 산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를 제외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그 사업계획에 포함된 모든 부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전체 사업계획부지의 면적'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 비율로 산정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Point

- ☑ 산지의 전용 또는 일시사용 등 수익적 처분의 요건을 해석하는 경우 사실상 다른 요건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수익 대상이 축소되지 않도록 해석해야 합니다.

NEW!

사례 6: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주택의 범위

해석 쟁점

- ☑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또는 「초지법」에 따른 초지가 아닌 농림지역에 설치된 「농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어업인 주택”의 일부를 활용하여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었습니다.

해석 방향

※ 법제처 해석례 23-1022

- ☑ 국토계획법령에서는 농림지역 안에 적법하게 건축된 농어업인 주택의 용도와 용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그 일부를 이용하여 추가로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2항에서는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요건으로 ‘농어업인 주택’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지 않은바, 농업진흥지역등이 아닌 농림지역에 설치된 농어업인 주택으로서, 농지법령에 따른 농어업인 주택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주택의 일부만을 이용하여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국토계획법령, 농지법령 또는 농어촌정비법령에 따라 금지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습니다.

Point

- ☑ 수익적 처분의 요건을 해석하는 경우 사실상 다른 요건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수익 대상이 축소되지 않도록 해석해야 합니다.

사례 7: 폐기물부담금 부과 면제 요건

해석 쟁점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폐기물부담금 부과에 대하여 규정함과 동시에 면제 요건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제 요건 중 '환경부장관과 회수·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재료·용기'의 경우에도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재료·용기'에 한정되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었습니다.

※ 법제처 해석례 22-0115

해석 방향

- ☒ 우선, 부담금 부과 면제 요건은 수익요건에 해당하므로 축소해석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해당 요건을 플라스틱 관련 사항으로 한정할 경우 플라스틱이 아닌 자원에 대한 재활용 유인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활성화하려는 이 법령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으므로, 해당 요건은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재료·용기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해석대상 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폐기물부담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하여야 한다.

2.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재료·용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 회수·재활용이 가능한 경우와 환경부장관과 회수·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협약의 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재료·용기**

사례 8: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해석 쟁점

- ☑ 「해양환경관리법」 제119조의2제1항에 따르면 오염물질이나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자를 관계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해양오염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배출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는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도 지급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해양경찰청 해석

해석 방향

- ☑ 신고 당시에는 배출행위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더라도 신고내용과 현장조사를 통해 그 위반행위자를 특정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Point

- ☑ 포상금 등 국민에게 수익적인 요건에 대해 축소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illegible]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부록

적극행정을 위한 법제처 활용법

01 중앙행정기관 96p

02 지방자치단체 98p

중앙행정기관

1

제도화 교육

가이드라인 전파

- ✓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수립 및 안내
- ✓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9

적극행정 법제 교육

- ✓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교육을 통해 전파
- ✓ 법제정책총괄과(교육 내용)
044-200-6565, 6569
- ✓ 법제교육과(교육 신청)
041-924-1712

2

입안 지원

법령입안지원

- ✓ 법령 입안단계에서 법리적 쟁점 검토 및 조문화 지원
- ✓ 법제지원총괄과
044-200-6833



3

정비 지원

법령정비

- ✓ 법제처 자체 발굴 및 정비과제에 대해 법제처가 주관하여 불합리한 법령 정비 실시
- ✓ 법령정비과
044-200-6575

4

해석 지원

정부유권해석

- ✓ 법령 해석에 의문이 있거나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과 해석이 엇갈리는 경우 전문적인 해석 의견 제시
- ✓ 법령해석총괄과
044-200-6706

지방자치단체

1

제도화 교육

가이드라인 전파

- ✓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수립 및 안내
- ✓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9

적극행정 법제 교육

- ✓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교육을 통해 전파
- ✓ 법제정책총괄과(교육 내용)
044-200-6565, 6569
- ✓ 법제교육과(교육 신청)
041-924-1712

2

입안 지원

자치법규 의견제시

- ✓ 자치법규 입안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리적 쟁점에 대해 의견 제시
- ✓ 자치법제지원과
044-200-6758

자치법제상담 119

- ✓ 입법기술적이거나 비교적 간명한 자치법규 사안에 대해 신속한 상담
- ✓ 자치법제지원과
044-200-6759

3

정비 지원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 ✓ 상위법령 위배 및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 신설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정비 지원
- ✓ 자치법제지원과
044-200-6764

위임조례
제때 마련 지원

- ✓ 법령 제·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통보하여 위임조례 정비 지원
- ✓ 자치법제지원과
044-200-6778

4

해석 지원

정부유권해석

- ✓ 법령 해석에 의문이 있거나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과 해석이 엇갈리는 경우 전문적인 해석 의견 제시
- ✓ 법령해석총괄과
044-200-6706

자치법규 의견제시

- ✓ 자치법규의 해석에 관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의견 제시
- ✓ 자치법제지원과
044-200-6758

2025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발행일 2024년 12월

발행처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발 간 등 록 번 호

11-1170000-100020-10

2025 적극 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
법제로 적극 뒷받침
하겠습니다

